

총학생회 회칙

- 제정 : 1985. 9. 14
- 개정 : 1988. 11. 1
- 개정 : 2011. 1. 3
- 개정 : 2017. 1. 2

제10장 선거

제53조(선거권)

- ① 본교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.
- ②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생지원처에 요청하여 선거일 이전에 수령한다.

부칙

(시행일) 본 회칙은 공포한 날(1985.9.14)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총학생회 회칙 시행세칙

- 제정 : 1985. 9.14
- 개정 : 2011. 1. 3
- 개정 : 2017. 1. 2

제1장 선거권, 피선거권

제2조(피선거권 및 후보자)

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만 부여된다.

1. 품행이 방정하고 징계 또는 유급 받은 사실이 없는 자
2. 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직을 사퇴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경과된 자
3. 입후보자는 정후보자는 6학기 이상 등록, 부후보자는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 평균이 "C+"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. 단, 7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재학이 아닌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.

※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보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자로 하고, 기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에 준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1997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